

(주)신한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(주)신한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2020.11.18.

— 다 음 —

1. 상 호 : (주)신한은행

2.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범위

- (금융서비스의 종류) 은행
- (주요 내용) 은행 앱 보유 고객이 신분증 없이도 은행 앱 로그인 절차를 통해 기존의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실명확인

3.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

- 국내 금융 소비자

4.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

- 은행 앱 보유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①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*, ② 기제출한(BPR시스템에 보관)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(유효성 등) 확인**,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이행하여 실지명의를 확인

* 기존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생체인증 또는 비밀번호 입력

** 은행이 보관중인 신분증이 재발급 등으로 인해 현재 유효하지 않을 경우 '불일치'로 조회됨

5.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

- (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)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

6. 부가조건

- (내부통제기준) 은행이 보관중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과의 대조시 동일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
- (진위확인시스템)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서비스를 사용할 것
 -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유효성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으로 실명확인증표를 제한하고,
 -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스캔이미지의 유효성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비스를 적용
- (소비자 보호방안) 소비자 보호방안(분쟁해결방안, 배상방안 등), 서비스 범위,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서비스 지정 후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,
 -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를 실시할 것
- (보안성 검토) 혁신금융서비스 실시 전,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

7. 지정일 : 2020. 11. 18.

8.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